시·도회 선거관리규정

시·도회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회장, 시·도회 감사, 시·도회 운영위원(이하 "시·도회장 등"이라 한다.)의 선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도회장 등의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은 당해 선거 전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가입 회원은 당해 선거 전년도 6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2020. 5. 7, 2024.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한 자는 3년 이내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

③정관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17. 4. 17)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관 (개정 2023.9.19.)

제4조(공정경쟁 의무) 시·도회장 등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타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비방 등 선거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원의 선거중립 의무) ① 직원은 시·도회장 등의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징계한다.

③ 모든 회원은 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5. 7)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도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역별 안배하여 당해 시·도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회원 탈퇴 및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때
2. 시·도회장 등 및 대의원에 입후보한 때

④ 선관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당해 시·도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둔다.

⑤ 선관위는 선관위의 설치 결과를 설치 후 즉시 시·도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회 선관위”라 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위의 존속기간 및 직무) ① 선관위는 선출 총회 개최일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시·도회장 등의 선거관리(등록·투표·개표 등)와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며, 중앙회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선관위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선관위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 선관위에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선관위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중앙회 선관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관위 재구성(기존 선관위 해촉 포함) 또는 중앙회 선관위의 직접 선거사무 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중앙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시·도회장 등의 선거사무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재발 또는 이 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회 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7)

⑧ 선관위 위원장은 중앙회 선관위에서 선거사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8조(선거사무종사원)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거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사무종사원은 협회 직원 또는 해당 시·도회 회원(시·도회장 등 및 대의원에 입후보한 자 제외) 중에서 선정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선거사무종사원은 선관위 위원에 준하여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등

제10조(시·도회장 등의 선출) ① 시·도회장과 감사는 시·도회 소속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시·도부회장 포함)은 각 업역별·지역별 안배를 위해 총회에서 선출되는 시·도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제10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 ①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지시, 방침, 권고 등) 등에 따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 당일 사전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② 사전투표는 총회 당일 일과시간 내에 하되, 정기총회에서 개표한다.(신설 2020. 10. 27)

③ 사전투표의 시간, 방법 등은 해당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④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회장 등의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0. 10. 27)

1. 시·도회장의 선출시 다수인이 입후보하여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때에는 투표에

참가한 회원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되, 이 경우 연령도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총회일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0. 27)

2. 감사의 투표에 의한 선출시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되, 이 경우 연령도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한다. 단, 등록후보자수가 선출대상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경우에는 총회일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0. 27)

⑤ 운영위원의 선출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도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한다.(신설 2020. 10. 27)

제11조(시·도회장 등의 선출인원) ① 시·도회장 : 1인

② 감사 : 2인 이내

③ 운영위원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포함)

1. 1급 시·도회 : 15인 이내
2. 2급 시·도회 : 11인 이내
3. 3급 시·도회 : 9인 이내

제12조(선거공고) ① 선관위는 시·도회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일 20일 전 근무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
2.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3. 후보등록 구비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시 · 도회장등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관하여 선거일 40일 전 근무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까지로 한다)까지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1. 예비후보자 등록 장소
2.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공고는 시 · 도회 사무실 게시판과 홈페이지 또는 협회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시 · 도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시 · 도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4.12.19)

1. 선출 총회 전년도 말 기준 회비를 완납한 정상회원(자격상실, 제명, 탈퇴, 자격정

지 제외)일 것

2. 선출 총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당 시 · 도회에 소속되고, 전체 5년 이상 해당 시 · 도회에 소속되어 있을 것

3. 중앙회 임원 · 운영위원 또는 해당 시 · 도회장 · 운영위원 · 감사 · 대의원 중 1개 이상의 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은 시 · 도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4.12.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 · 도회에서 정상회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가. 1급 시 · 도회 : 70명 이상

나. 2급 시 · 도회 : 50명 이상

다. 3급 시 · 도회 : 30명 이상

2. 제1호의 추천시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 이전 15일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시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 · 도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3년이상 당해 시·도회에 소속된 회원인 자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 전년도 7월 1일 이후 신규가입한 자(개정 2020. 5. 7, 2024.12.19)

2. 회원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

3. 회비를 미납하여 회비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4)

1. 제3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자 (신설 2020. 5. 7, 개정 2022.12.14)

2. 선거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신설 2022.12.14)

3.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 처분을 받고 복권된 자 (신설 2022.12.14)

4.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자 (신설 2022.12.14)

제14조(후보등록) 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제12조 규정의 선거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일간으로 하되, 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하며, 등록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 후 선관위가 입후보자 참여 하에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도회장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관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5.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6.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시·도회장 후보자에 한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 도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4.12.19)

1. 제6조에 따른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
2. 정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회(시 · 도 조직을 포함한다)의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 · 도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에서 발행한 사퇴확인서(사퇴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14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공고를 한 날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9)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9)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이력서에 상벌 사항 및 협회 가입된 기간과 경력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시 · 도회장 입후보자에 한한다)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④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3항에 따른 기탁금과 제2항의 제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신설 2024.12.19)

⑤ 예비후보자의 등록 무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

비후보자"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9)

⑦ 예비후보자가 제14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때 선거운동기간 전일까지 예비후보자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제10항에 따른다.(신설 2024.12.19)

⑧ 예비후보자가 제14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신설 2024.12.19)

⑨ 예비후보자가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전액이 시·도회 기금으로 귀속된다.(신설 2024.12.19)

⑩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제작(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및 그 밖에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하여 선거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24.12.19)

제15조(기탁금) ① 시·도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은 유효투표 중 득표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총회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반환하되, 득표율이 20퍼센트 미만이거나 후보자등록 후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도회 기금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12.19)

제16조(등록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가 미달된 것이 발견된 때

② 입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때에는 시·도회 선관위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보자가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② 시·도회장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월 이내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13조 제1항 포함)
3. 통상적인 협회(중앙회 및 시·도회, 각 업역별 협의회 등) 활동
4. 경조사, 협회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5. 연말연시, 명절,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행사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7)

가. 개최 3일전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을 별지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후보자별 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 1회에 한하며, 식사,기념품의 제공은 금지한다. 다만, 5천원 이하의 다과는 제공할 수 있다.

③ 협회 및 회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선심성 공약은 금지하며, 이 경우 선관위에서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제19조(선거인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중앙회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해당 시·도회별 선거사무담당자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0. 5. 7)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회원번호, 휴대폰번호(안심번호 포함), 주소(직장명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선거인명부의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 7. 1)

③ <삭제 2020. 5. 7>

④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추천자의 회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선관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시기의 선거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제공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각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후 교부 또는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0. 5. 7)

⑥ 선관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선거인의 선거 참여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선거홍보물) ① 후보등록을 한 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배포는 해당 시·도회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0. 27)

② 선거홍보물의 종류, 규격, 기재 내용 등은 선관위에서 정하며, 선거홍보물의 내용에 대해서 배포전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0. 27)

③ 후보자(시·도회장 후보자에 한함)는 선관위에 3회 이내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 발송을 요청(선거 당일 제외)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 일정 및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후보자에게 안내한다.(신설 2020. 5. 7)

④ 후보자(시·도회장 후보자에 한함)는 선관위에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1회(수정·변경 없음)에 한해 게시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 일정 및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후보자에게 안내한다.(신설 2020. 5. 7)

⑤ 제1항의 선거 홍보물 배포기간은 선거운동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10. 27)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본인 또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왜곡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는 협회와 회원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22조(금지위반에 대한 신고) ① 이 규정에 의한 금지규정에 대하여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선관위는 관련자에게 출석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부정선거 예방과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제23조(소견발표)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당일 후보자별로 소견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시간은 시·도회장 후보자 10분 이내, 감사 후보자 5분 이내로 한다.

제24조(선거일시 등) ① 선거는 해당 시·도회 정기총회일에 실시하며, 선거시간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단, 총회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권자의 신분확인 등 등록(투표용지 배부)을 18시 이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총회 당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투표는 총회 당일 일과시간 내로 하되, 총회에서 개표한다. (신설 2022.12.14)
2. 제1호의 투표 시간, 방법 등은 해당 선관위에서 중앙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4)

③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는 시·도회규정 제18조 제5항에 의한 총회소집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시·도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정기총회의 기념품 및 무료 식사 제공을 금지한다. 단, 선관위에서 5천원 범위 내의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2.12.14)

제25조(선거참관인) ① 입후보자는 선거참관인을 선거권자 중에서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참관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3명 이하의 선거참관인을 신고하며, 선정·신고된 선거참관인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를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제작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5. 7)

② 선관위 또는 선거참관인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및 사진촬영장비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지

시에 불응할 경우 선거인의 당해 선거권을 무효로 한다.(신설 2020. 5. 7)

제27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선관위 위원과 선거사무종사원이 함께 개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개함한 후 득표수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고, 입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입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후 각각 봉투에 넣고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 모두에게 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한 용구나 지정한 방법으로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 기재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후보기표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③ 유효표·무효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29조(개표결과의 선포 및 통지 등)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투표인수, 투표자의 수, 유효표수, 무효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된 자에게 지체없이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록을 첨부하여 해당 사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당선의 결정과 무효) ① 시·도회장 등의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회장의 선출시 다수인이 입후보하여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때에는 투표에 참가한 회원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되, 이 경우 연령도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단, 단독 입

후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12.14)

2. 감사 및 운영위원의 투표에 의한 선출시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되, 이 경우 연령도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한다. 단, 등록후보자수가 선출대상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경우에는 총회일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2.12.14)

② 당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을 때
2. 법원에 의하여 선거무효 판결이 있을 때
3. 입후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거를 목적으로 회원의 회비를 대납한 때

③ 시·도회장 등에 당선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취임승낙서를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회는 취임승낙서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④ 이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도회장이 당선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시·도회장이 총회의 의결 또는 규정에 따라 위임받아 선출(위촉)한 자(운영위원, 대의원 등)는 당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4)

제31조(선거의 이의제기)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선관위 위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선관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승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 선관위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제32조(선거기록) ① 선관위는 회의록·선거록·투표록·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인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기구에서는 선거인명부, 투표지, 회의록, 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승인 및 보고)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

1. 승인사항 : 정관 및 시·도회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선

관위의 결정

2. 보고사항

가. 선관위의 구성 및 설치 결과

나. 기타 선관위에서 결정된 중요사항

제34조(해석 및 준용) ① 선거관련 규정 등에 대한 해석은 1차로 선관위에서 하며, 최종 중앙회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② 기타 시·도회장 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징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중앙회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② 제1항에 따라 규정 위반사항 등을 보고받은 중앙회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③ <삭제 2020. 5. 7>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경우는 정관 제32조제5항의 개정 시행일(2016.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은 2016년 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136차 이사회 의결일(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회 원 번 호 :　　2. 회원가입일 :　　.　　.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상기 본인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　　) 시・도회의 (　　)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인(후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　　) 후보자 서약서

(　　)후보 서약서

1. 회 원 번 호 :　　2. 회원가입일 :　　.　　.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상기 본인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　　)
후보자에 등록을 함에 있어,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과 공정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후보자의 자격확인,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 대한 입후보자(당선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제공, 기탁금 반환, 선거사무와 관련된 연락, 서류보존 등 선거관리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직책),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자격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입후보한 날로부터 선거종료후 1년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입후보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정기총회에 시·도회장 등으로 입후보함에 있어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귀 협회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시·도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

시・도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

추천받는 자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회원번호	

위의 회원을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시・도회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　　) 후보자 사퇴서

(　)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			2. 회원번호	
3. 후보자	성 명		4. 생년월일	-
	주 소			

위의 본인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의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선거인명부 제공 대장 (개정 2020. 5. 7)

선거인명부 제공 대장

정보 명칭	○○ 시·도회 ○○선거 선거인 명부		
이용 또는 제공 구분	선거사무담당자(사무국장, 직원)		
제공받는 자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관련 근거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9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선거사무용 (선거권자 확인,투표용지 배포, 추전자 확인 등)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선거인명부 제공 각서(선거사무담당자, 시도회 선관위) (개정 2020. 5. 7)

각 서

하기 본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선거사무담당자, 선관위)로서 수령하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용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아래와 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만일 ○○선거사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 제공조건

1. 선거 후 책임파기,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금지 및 외부유출금지
2. 선거사무용(선거권자 확인 및 투표용지 배포 확인, 추천자 확인 등)

년 월 일

○○시·도회 선거사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선관위 위원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 모든 자에 한해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선거 참관인(선정·교체) 신고서

선거 참관인 (선정 · 교체)신고서

1. 선 거 명 :
2. 후보자명 :
3. 회원종류 :
4. 참관인명 :

회원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정 · 교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　　) 선거 투표용지

(　)선거 투표용지

기 호	후 보 자	기 표
1		
2		
3		

(　　) 시·도회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　　) 취임승낙서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 원 번 호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 개최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으로 선출되었기에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후보자·후보 예정자 행사 개최 신고서(신설 2020. 5. 7)

1. 회 원 번 호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상기 본인은 시 · 도회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　　) 시 · 도회의 (　　) 후보자·후보 예정자로 선거사무소 개설(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개최내용	
목　　적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제공내용	
기타사항	

*** 비 고**

1. 상기 신고서는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

2. 후보자·후보 예정자 별 선거사무소 관련 행사는 1회에 한하여 개최

3. 행사 개최시 기념품, 식사 제공은 금지하며, 5천원 이하의 다과 제공은 가능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시 · 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